

高度成長以後의 韓國沿岸漁場 利用關係의 變貌 (II)
— 漁業權의 歸屬에 關하여 —

김 병 호*

A Study on the Change in Utilization System of Coastal Fishing
Ground in Korea after High Economic Growth (II)
— Focusing on the Possession of Fisheries Right —

Kim, Byung-Ho

目 次

서 언	2. 일본의 어업면허 우선순위
I. 어업권자의 결정에 있어서 어장계획의 의의	3. 한국의 어업면허 우선순위
1. 어장계획과 적격성 및 우선순위	III. 입어 및 입어권
2. 地元지구와 關係지구	1. 어업권과 입어 및 입어권
3. 생산력향상과 생활권보장	2. 일본에 있어서의 입어 및 입어권
II. 적격성 및 우선순위	3. 한국에 있어서의 입어
1. 적격성의 의의	맺는 말

서 언

現象으로서의 어업의 제 관계는 역사성에 의해 형성된 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다소 독자성을 갖는 법제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어장이용에 한정해서 정책적 목표를 그 내부에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어업법이 그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어떻게 어장을 이용시키려고 하는 가는,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어업권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이라고 하는 제도적 형태구분을 매개로 하고 있고, 더우기 이들 제도적 형태는 항상 그 각각의 어업주체를 한정하는 일과 결부되어 있다. 그런데 어업주체를 한정한다는 것은 제도적 운용에 있어서 단순히 보완적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그 제도 자체의 본질적 부분을 형성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

* 統營水産專門大學 教授.

이러한 사실은 한편에 있어서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제도가 현실의 관계를 포섭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면을 나타내는 일이면서, 동시에 전술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독자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제도적 운용에 의한 정책수행의 한계를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성은 특히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형성된 연안어장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또한 봉건적·폐쇄적인 것으로 특징지워지는 어촌사회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할 것이며, 행여 정책수행만을 서둔 나머지, 제도가 독자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이는 정책의 횡포로 비칠 것이며, 어장이용질서의 문란과 어촌경제의 피폐, 어장의 황폐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어업권제도에 있어서 아직도 先願主義에서 탈피하지 못한 한국의 면허방식과 일본의 어장계획에 의한 방식과는 어업권에 의해 영위되는 어업의 종류와 同어업권의 소유주체 내지는 同어장의 이용주체와의 관련의 형태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즉, 어장의 이용에 있어서 先願主義인 경우는 어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주체의 성격에 의해 이용형태로서의 어업의 종류가 정해지게 되지만, 어장계획에 의한 경우는 우선 어업의 종류가 정해지고 나서 이용주체가 법정 우선순위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면허관청이 광범한 자의성을 가지고 어장이용의 계층을 직접 통제할 수 있음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어업의 종류를 정하는 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이용주체를 통제할 수 밖에 없게 되며, 더우기 그것도 해구어업 조정위원회의 주도 내지는 강력한 견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업권자의 결정에 관한 양국의 어업법에 있어서 그 精緻함의 格段의 차이로써 나타나고 있다.

I. 어업권자의 결정에 있어서 어장계획의 의의

1. 어장계획과 적격성 및 우선순위

어장계획이야말로 일본 어업권제도의 기반임과 동시에 그 출발점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은, 어장계획에서 정해지는 사항¹⁾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면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자체 어업권자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계획수립이 완료된 후에는 어업권자의 결정이 면허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에 의해 가능한 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때문에, 일본의 어업법은 적격성 및 우선순위에 관한 조항이 꼼꼼하고 精緻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어업권자를 정하는 방식에 관해 고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히 적격성 및 우선순위만에 대

1) 일본어업법 제11조 1항을 참조.

해 생각해서는 안 되며, 전술한 어장계획제도와 관련지위 논할 성질의 것이라 하겠다.

어장계획은 都道府縣知事가 작성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본래의 성격은 어디까지나 어민이 주체이며, 행정관청은 해구어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수렴한 어민의 의견을 기초로 하면서, 다만 이들 어민의 요구에 대해 면허권자로서 적절한 통제를 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都道府縣知事가 어장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해구어업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²⁾ 또 同위원회는 都道府縣知事に 대해서 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취지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

2. 地元지구와 關係지구

이러한 어장계획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어업권자의 결정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서는 어업종류와 地元지구 및 關係지구를 정하는 일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地元지구 및 關係지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어업법 제11조 1항은 「정치어업 및 구획어업에 대해서는 그 地元지구(자연적 및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봐서 당해어장이 속한다고 인정되는 지구를 말함), 공동어업에 대해서는 關係지구를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고, 關係지구에 대해서는 법문상 특별히 언급한 바는 없지만, 그 성격은 地元지구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법문상의 地元지구 및 關係지구에 대한 金田禎之씨의 해석⁴⁾을 요약한다면, 「자연적 조건」이라 함은 지리적 조건을, 「사회·경제적 조건」이란 그 어업에 대한 생활의 의존도를, 그리고 「속한다고 인정되는 지구」라 함은 그 곳의 어민에게 당해어업을 맡기고, 또한 행하게 함이 마땅한 지구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地元지구 및 關係지구의 개념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어업법제정 직후인 제1차 어업권切替時,⁵⁾ 수산청의 都道府縣에 대한 지도내용⁶⁾으로부터 관련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동어업에 대해서 『1. 행정구역의 경계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2. 1종공동어업은 증식관리를 고려해서 부락마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1村단위로 생각해서 하나의 권리로 하고, 정관에 의해 부락의 協組마다로 관리시킴이 좋다. 2종이하(1종공동어업을 제외한 모든 공동어업: 필자註)에 있어서는 부락마다로 구분하는 것은 좋지 않다. 3. 2이상의 協組가 공유로 관리하고, 입회해서 조업하는 때에는 어업권은 공유로 함이 마땅하나, 입회의 정

2) 同上.

3) 일본어업법 제11조 3항 참조.

4) 金田禎之, 『實用漁業法詳解』, 東京: 成山堂書店, 1988年, pp. 122-125.

5) 일본의 경우, 일체의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만료를 일정시점에 맞추어 두고, 어업권의 일제소멸, 일제갱신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어업권切替라 부르며, 1952년 제1차 어업권切替 이후, 5년마다 1번씩 행해 오고 있다.

6) 일본수산청, 『漁業基本對策史料』 第1券, 1963年, pp. 199-201.

도가 사소한 것이거나, 혹은 어장에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장계획수립 시 關係지구로 하지 말고 면허후 입어권을 설정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地元지구 에 대해서는 『1. 정치 및 구획어업은 어장을 미리 정한다. 그 어장에 의존하는 어민의 분포는 저절로 알 수 있을 것이다. 2.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어민의 분포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멀리 떨어진 지역을 동일어장의 地元지구로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3. 구획어업의 경우, 아주 동떨어진 지역은 地元지구로 하지 않고 입어권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4. 정치어업은 地元지구를 넓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고 있다.

3. 생산력향상과 생활권보장

이상의 사실로부터 地元지구 및 關係지구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바다로부터 육지를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환언하자면, 당해어장에 대한 지역으로서의 경제적 의존도 내지는 실적, 즉 사회·경제적 조건을 중시하려고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상대적 의미에서이며, 결국은 자연적 조건, 즉 어장과외의 거리=지역주의를 초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어업법상의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昭和초기로부터 본격화한 어선동력화와 함께 어장의 외연적 확대가 진행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영세어민은 연안에 남겨졌고, 그들에 있어서 어장확대란 대개 橫斷的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연안어장 내부에서의 조업은 각지로 부터의 어민이 뒤엉킨 형상이었을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특히 戰後 맥아더 라인에 의한 어장축소 이후 일층 심화되었을 것이다. 어업권의 일제소멸에 의한 제1차 어업권切替時 이러한 어장의 협소함에 대한 욕구불만이 지역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표출되었으리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구획어업과 소형정치어업이 조합관리어업권으로 포함된 일에 의해 어장이용에 있어서 지역주의가 제도적으로 일층 강화된 사실은 어장에 대한 사회·경제적 측면의 강화라고 하는 정책의지와 어떻게 관련지워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 사회경제적 측면의 강화라고 하는 일도 결국은 생활권·생존권 보장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지역주의 속으로 흡수되고 만 것일까?

戰後 일본의 어업제도개혁이 부르조아적 개혁이라고 불리우고는 있지만, 鈴木旭씨는 역사적 측면에서 이를 평가하는 가운데, 『법 제도만에 국한해서 본다면, 어장의 어민적 이용』⁷⁾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업에 대한 자본진출의 압력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였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당시의 제도개혁이 가까운 장래의 맥아더 라인의 철폐를 그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연안어업에 대해서는 생활권·생존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기능을 중시하면서, 생산력향상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민을 주

7) 鈴木旭, “어업권제도와 어장이용,” 『漁業經濟研究』, 第26卷, 第1,2合併號, 1981年 3月, p. 11.

체로 하는 어장계획제도의 운용을 통한 수면의 종합적 이용에 의해 달성하려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생활권·생존권 보장과 수면의 종합적 이용이라고 하는 兩極처럼 보이는 문제의 조화는 어민이 주체로 되는 어장계획 작성시 어업종류와 地元지구 및 關係지구를 동시에 거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끌어내려고 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어업법상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하면 생활권·생존권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궁리였고, 또한 당해어장에서 어업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를 빠짐없이 그 이용에 참가시키려고 하는 노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II. 적격성 및 우선순위

1. 적격성의 의의

공유수면에 있어서 배타적 이용권인 어업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소유주체로 될 자에 대해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서의 적격성을 묻지 않으면 안될 것이나, 한국의 경우, 적격성에 관한 별단의 규정이 두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양세식씨는, 한국의 경우, 적격성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1. 地先지구의 개념을 명확히 정하는 일, 2. 자영이 원칙으로 되는 어업과 조합관리를 우선해야 할 어업과의 구분, 3. 구체적인 적격성기준을 정하는 일」⁸⁾ 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3가지의 전제는, 뒤집어 말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적격성의 규정이 두어져 있지 않은 이유이기도 한데, 이들 3가지의 전제에 있어서의 공통문제로서는 지선어민에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함이 마땅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어업법제정 이후의 연안어업정책으로 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는 지금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며, 특히 과거의 무원칙적인 면허남발에 기인하여 어장으로부터의 富가 지선어촌 경제와 괴리됨으로써 어촌의 궁핍이 가중되고, 또한 건전한 생산의욕조차 억압되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지선지구에 관한 개념을 확정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적격성에 대한 기준은, 먼저, 「스스로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 면허한다」고 하는 대원칙 위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정신과 어촌의 민주화」를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서 요구하고 있다.⁹⁾ 자영이 아닌 조합관리 어업권의 대상어업에 대해서는 「1. 地元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내에 포함하고 있는 일,¹⁰⁾ 2. 조합원의 자격을 특정어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

8) 양세식, “한국수산업법 연구(I),” 『부산수산대학논문집』, 제15권, 1975년, pp. 56~57.

9) 일본어업법 제14조 1항을 참조.

10) 同上 2, 6, 8항을 참조.

정하는 것이 아닐 것,¹¹⁾ 3. 地元·關係지구 내에 주소를 가지고 당해어업을 영위하는 자의 3분의 2이상(세대단위)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을 것¹²⁾ 등의 모든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적격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전술한 적격성을 가진 『수협』¹³⁾의 조합원이 아닌 어민의 보호를 위해, 당해 『수협』으로의 가입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 일은 물론, 공동신청¹⁴⁾ 및 공유신청¹⁵⁾의 제도도 두고 있다.

2. 일본의 어업면허 우선순위

어업면허 우선순위란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서의 적격성을 가진 자에 한해서, 다시 그 수를 제한할 필요 때문에 두어지는 것이며, 적격성이 절대적 가치기준에 의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이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는 정책적 가치기준에 근거해서 면허신청자에 대해 랭크(Rank)를 붙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內實이라고 하는 것은 연안어업에 대한 정책차원에서의 가치기준 여하에 따라서 다를 것이며, 이러한 가치기준이란, 물론, 기술적·사회경제적 요건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경직성을 본성으로 하는 법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 표현되고, 더우기, 그 대상이 일반적으로 재산권적 성질을 갖는 어업권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장래의 충분한 기간에 있어서의 제요건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통찰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일본의 어업법이 어업권의 일체소멸이라고 하는 整地작업을 행하고, 각 어업권의 면허시기를 일정한 시점에 맞추어 놓은 후, 어장계획에 의한 면허방식을 채택하는 일에 의해 불확실한 장래의 여건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어업법내에 가지게 하였었음에 비해, 한국의 어업법은 생산력증대라고 하는 일면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무제한적인 형태로 개인면허를 남발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70년대 후반 이후, 어업에 있어서의 제변화가 어업내부의 대립·갈등으로 표출되는 사태에 대해 속수무책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제측면은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되어, 우선 일본의 우선순위규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공동어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업권어업으로 한 이유로부터 생각하더라도, 적격성은 『수협』 및 同연합회만에 있는 것이며, 더우기 關係지구가 다수의 『수협』의 업무구역에 걸

11) 同上 2항 및 8항의 但書를 참조.

12) 註10)과 동일.

13) 일본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을 그냥 『조합』이라고 부르고 있고, 어업관계법령상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를 『수협』이라 부르기로 하며, 한국의 그것에 대해서는 이를 단순히 수협으로 표기하여 지구별수협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표기상의 구분은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그것이 계통조직상, 그리고 기능 및 규모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4) 일본어업법 제14조 3항, 10항.

15) 同上. 4항, 10항.

쳐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적격성의 요건을 감안할 때, 이들 상호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할 여지는 없는 것인 고로,¹⁶⁾ 우선순위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특정구획어업은 조합관리어업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긴 하지만, 단체적 관리를 본질적으로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적격성을 갖는 『수협』 및 同연합회가 면허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순위 이하에 있어서의 경영자면허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때, 우선순위의 규정은 경영자면허 대상어업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정치어업과 구획어업(특정구획어업을 제외한 것)의 우선순위규정을 본 즉, 먼저 후자는 진주양식과 제2종 구획어업인 축제식 및 網切式(파일식) 등이며, 기술적 측면에서 보아 지선어민에는 익숙치 않은 것들임에 비해, 정치어업은 거기서부터 생산되는 富가 지역경제와 표리 일체라고 하는 성격이 강한 점 이외에, 지선어민으로서도 종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인 것인 고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지선어민이 주체로 되는 경영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한편, 가능한 한 同어업으로부터 생산된 富가 널리 지선어민 전체에 환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치어업에 있어서 실제의 우선순위규정은 보통의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면허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地元어민의 대부분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경영의 주체가 자본이 아니라 地元어민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경영으로부터의 이익이 널리 그들에게 환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협』 또는 법인을 제1순위로 하고, 이어서 地元어민 전체에 대한 대표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직구성원의 참가의 목적이 단순한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해어업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 구성되고 있고, 또한 그들에 의해 경영이 지배되는 조직으로서 地元어민 7인 이상이 참가하고 있는 법인에 제2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이들 조직을 통해서 가능한 한 다수의 地元어민을 당해어업의 경영에 참가시키고자 하여 前記한 제1순위의 『수협』 또는 법인으로의 가입 내지는 이들과의 면허의 공동신청에 대한 규정¹⁷⁾이라든가, 어민회사 등에 대한 규정¹⁸⁾ 등을 두고 있는 것 외에도, 법인격이 없는 소위 大數조합 등의 임의조합에 대한 잠정조치¹⁹⁾ 등도 두어져 있다. 이러한 제규정과 함께, 한편으로, 정치어업과 같이 대자본이 요구되는 어업은 영세어민들로서는 자본의 부족이 가장 큰 애로로 되고, 따라서 조합자영이라는 것도, 제1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배려하여, 타인의 출자를 받는 일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여 『수협』에 대한 타인의 경영지배에 대한 예외규정²⁰⁾을 두고 있다.

구획어업(진주양식 및 특정구획어업권의 내용인 구획어업을 제외)은 대체로 대상업종의 어

16) 同: 8항을 참조.

17) 일본어업법 제16조 10항을 참조.

18) 同: 8항 3호를 참조.

19) 일본어업법 부칙 제3조를 참조.

20) 일본어업법 제38조 4항을 참조.

장이용 형태에 있어서 배타적 성격이 매우 강하고, 지선어민에게는 익숙치 않은 것이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별도로 지선어민의 이용 내지 참여를 장려하려고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同어업의 어업법상의 면허우선순위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어업법 제17조 :

- 1항. 어업자 또는 어업종사자인가, 아닌가?
- 2항. 어민인가, 아닌가?
- 3항. 地元지구내에 주소를 가진 자인가, 아닌가?
- 4항. 1. 그 신청에 관한 어업과 同종의 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
2. 그 이외의 연안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
3. 그 이외의 자
- 5항. 당해해구에 있어서 경험이 있는가, 어떤가?
- 6항. 이상까지에 있어서 同순위인 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6개의 사항」²¹⁾을 감안해서 정한다.

이상의 우선순위를 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同어업은, 그 특성으로부터 봐서, 조합자영 등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생산의욕과 경영능력의 소유자에게 경영을 맡기고, 地元어민은 同경영에 개별적으로 참가(주로 종사)하겠끔 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이러한 사실은 同어업으로부터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장을 지배하는 일에 의해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어업권자의 기업가로서의 진취성과 경영에 있어서의 창의성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하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한국의 어업면허 우선순위

1) 어업법상의 우선순위 및 문제점

우선, 공동어업에 대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도 없을 뿐아니라, 더우기 그 면허도 수협 내지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따라 어장을 구획하고 있으므로, 同어업에 대한 적격성의 규정이 일본의 경우와 같이 關係지구내의 수협 내지 어촌계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같은 역할도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억지로라도 전술한 바와 같은 성격을 가진 일본의 적격성규정에 유사한 규정을 들라고 한다면, 『공동어업은 일정한 지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자의 어업경영상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서 면

21) 여기서의 「6개의 사항」이란. 1. 당해어업에 그 자의 생계가 의존하는 정도, 2. 노동조건, 3. 地元어민을 사용하는 정도, 4. 地元어민이 당해어업의 경영에 참가하는 정도, 5. 당해어업에 대한 경험의 정도, 6. 당해어업의 어장이 속하는 수면에서 조합하는 다른 어업과의 협조 및 그 외에 수면의 종합적 이용에 관한 배려의 정도 등이다.

허한다』(한국어업법 제10조)고 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우선 순위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어업과 정치어업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일본과는 달리, 모든 양식어업 (제1종 공동어장내의 것을 제외)이 개인면허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양식어업에 있어서 우선순위규정이 연안어장이용에 대해서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어업법에서의 우선순위규정은 일체의 양식어업과 정치어업을 단일의 규정으로써 일률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업법 제27조

- 1항. 1. 그 신청의 어업과 同종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
2. 그 외의 연안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
3. 그 이외의 자
- 2항. 1. 면허신청시, 당해어업의 어장에서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
2. 신청에 관한 어업의 어장에서 경험이 있는 자
3. 그 이외의 자
- 3항. 前항까지에서 同순위의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1. 노동조건
 2. 당해어업의 경영에 지역어민이 참가하는 정도
 3. 당해어업에 대한 경험의 정도, 자본 및 경영능력
 4. 당해어업으로부터 그 경영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의 정도
- 4항. 당해어장이 제1종 공동어장내에 위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역어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공동경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그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어민이 조직하는 수협 혹은 어촌계로서 다음의 전부에 해당하는 자는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순위로 한다. 다만 수협과 어촌계가 경합한 경우는 어촌계를 先순위로 한다.
 1. 어업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구성원의 과반수가 그 신청에 관한 어업과 同종의 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혹은 당해어업의 면허가 다른 자에게 주어질 때는 종전의 생업을 失하게 될 때
 3.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그 경영하는 어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일 것
 4. 구성원 가운데 상시 종사하는 자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3분의 1이상을 점하고 있을 것
 5. 1구성원의 출자액이 구성원의 평균출자액의 3배에 상당하는 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구성원은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가질 것

5항, 本條의 규정에 있어서 경험이 있는 자라고 함은 「수산기술자」,²²⁾ 혹은 그 신청일 이전 5년간에 있어서 어업을 경영 또는 이것에 종사한 일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27조의 1항부터 3항까지가 양식어업 및 정치어업의 면허우선순위이며, 4항은 이들 어업 권어업의 어장이 제1종공동어장 구역내에 위치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먼저 前者에 대해서 본 즉, 이것은 일본어업법 제17조(구획어업권의 면허우선순위) 가운데 4항이하를 거의 그대로 모방·이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점을 지적 한다면, 한국어업법에 있어서 2항 1호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것과, 일본어업법 同條 5항의 『당해해구』가 『신청에 관한 어업의 어장』으로 되어 있는 것, 일본어업법 同條 6항의 6개의 감안사항이 4개로 줄어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양식어업과 정치어업의 相違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유사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들 어업은 어장의 이용형태 및 다른 어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자본과 경영의 규모 및 성격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말할 것도 없이, 어장의 배타적 이용권의 행방을 정하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각 어업의 특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그 전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업에 대한 어업권 주체의 결정방법을 단일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고자 한 사고방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러한 일은 어업법제정 당시의 사회경제적 사정하에서는, 또 이들 어업이 미분화상태에 있던 시기에 있어서는 다소라도 용인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근세이후 어장이용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하는 기회를 박탈당해 온 한국어업행정의 지식 및 경험의 부족, 나아가서는 당시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어장질서의 문란에 따른 어업법제정의 긴박함 등으로 봐서, 어떤 의미에서는, 장래의 어업에서의 변화까지 예상한 세련된 입법을 기대하는 일 자체가 무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같은 제사정에 기인한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영세어민의 생계의 터전인 연안어장에 대해서조차 소위 어업의 근대화 내지 기업적 어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정책을 결부시키고, 어장이용관계의 형성을 그러한 강제력에 의해 주도해 왔다고 하는 사실이다.

새로이 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과거의 조선어업령에 근거하면서 일본의 新어업법을 일부에 있어서 형식적으로(그것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긴 하였지만) 모방·이식함으로써 제정된 한국연안어장 이용제도의 특징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말하자면, 당시로서는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던 연안어업에 있어서 공동어업을 제외한 모든 어업권의 면허우선순위를 일

22) 한국어업법시행령 제30조 2항은 이것에 대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산증식기사 또는 수산증식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수산계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에 의한 어민후계자로서 수산청장이 지정한 전문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본어업법 제17조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것²³⁾을 가지고 대체하였지만, 공교롭게도 그 17조의 대상으로 되는 어업이란 것이 일본의 어업권어업중에서도 독특한 어업(진주양식업과 함께)이었던 고로, 특별히 개인면허가 강조된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일로 대신할 수 있겠다.

2) 개인면허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점

한국어업법 제27조가 일본어업법 제17조를 모방하면서도 유독 1항 내지 3항에 대해서는 이를 사양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들 조항이 연안어업의 근대화, 특히 양식업의 육성에 대해 걸림돌이 된다고 느낀 것이며, 이러한 사실로부터도 한국연안어장 이용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간파할 수 있다.

당시의 소위 어업근대화 정책의 성격이란, 연안어장이용에 대해서조차도, 양식어업 및 정치어업의 면허과정에서 어장이용의 주체가 「어민²⁴⁾인가, 아닌가」, 「地元지구내²⁵⁾에 주소를 가진 자인가, 아닌가」 등에 대해서는 물론, 놀랄만한 일로서는, 그들이 「어업자 혹은 어업종사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조차 묻지 않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後者의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남득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이 단순한 부주의 따위에 의한 일은 아니었음이 다음의 諸點으로부터 볼 때 명확해진다.

前記한 한국어업법 제27조 2항 1호는 1981년 개정에서 신설된 것이므로 그 이전의 기간에 있어서는 同1호를 제외하고 봐야 할 것이다. 어업법 제27조 1항 및 2항을 보면 양식 및 정치어업의 면허우선순위는 어느 것도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맡겨져 있지만, 그 『경험』유무의 판정은 그것만을 가지고서는 별로 의미를 가질 수 없다.²⁶⁾ 그것은 同條 5항이 그 충족조건 하나로서 「수산기술자」를 덧붙여 놓고 있으면서도, 그 「수산기술자」에 대해서는 1981년의 개정까지 어업관계법령의 어디에도 관련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이다. 요컨대, 양식어업 및 정치어업의 면허우선순위의 적용은 그 신청자에 대해 일정한 사실에 대한 경험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그 경험유무의 판정은 완전히 행정관청의 자의에 맡겨져 있었던 고로, 실제로는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곳이라면 누구라도 『교섭』만 잘 이루어진다면 어업권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굴양식업의 중심지인 경남 통영지구에 있어서, 굴양식업의 발전초기, 굴양식업자들의 前職을 조사한 연구보고로부

23) 제정당시에는 현재의 제27조 2항 1호는 없었다.

24) 어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조 2항이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로서의 개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업법도 대체로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5) 한국어업법상에는 地元 및 關係지구라고 하는 개념규정은 없지만, 일본의 그것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1975년 어업법개정에 의해 어촌제가 어업권 향유주체로 될 수 있기까지는, 수협의 업무구역인 시·군이 대체로 그 범위였다고 할 수 있다.

26) 일본어업법 제16조 3항에서는, 경험이란 「신청일이전 10개년간에 있어서 어업을 영위 또는 그것에 종사한 일」이라고 하고 있고, 또한 金H씨에 이것에 대해, 「10개년간에 있어서 그동안 잠시라도 행한 일이 있다면, 된다」라고 解하고 있다. (註4)의 전게서, p. 16.

터도 엿볼 수 있다. 『同연구보고²⁷⁾』에 의하면, 총조사대상 80人中운데 종전부터 연안어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 24人(30%), 수협직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28人(35%), 그 외가 28人(35%)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은 양식어업 및 정치어업의 면허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적어도 1981년 어업법개정 이전까지에 있어서는, 그것은 일종의 악세사리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3) 연안어업정책과 어업면허

1952년 어업법제정이후, 한국의 어업정책은 수산물 공급확대 및 수출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목표하에 외국원조와 차관을 주된 재원으로, 우선, 근해 및 원양에서의 기업적 어업 육성에 매진하였으며, 그것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196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동일한 논리로 연안어업에 대해서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고 자본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그러나 이것은 연안어업에 대한 정책이었다고는 하지만, 지선어민을 위한 것이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근해·원양에서의 기업적 어업 육성과 연안에서의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라는 것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어선어업, 그 중에서도 특히 근해어업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이나 유통시설 등에 공공적 투자를 행함과 동시에 개별경영에 대해서도 각종의 자금지원을 행하는 등, 그 육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과도 관련하여, 어장이용면에 있어서도 조업구역의 단속 등에 있어서 이들 근해어업을 비호하는 듯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1960년대까지는 근해어업의 어장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영세연안어민의 어장과 상당히 중복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좁은 연안어장에 위집해 있는 영세어민에 있어서, 정책적 지원에 의한 근해어업의 성장은 한편으로 그들이 완전히 연안어업과 어장을 달리하지 않는 한 생산단계에서의 경쟁의 격화로 되고, 他面에서는 소수의 근해어업이 한국내 총수산물공급에서 점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魚價는 이들 어업에 의해 주도되어지게 됨으로써 수산물수요의 급속한 증대²⁸⁾에도 불구하고, 연안어획물의 가격은 상대적 정체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어촌경제 특히 연안어선어업은 급속히 침체되어 가지만, 알곳게도, 마치 이러한 연안어선어업의 침체에 대한 代案과도 같이 등장한 것이 전술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였고, 그것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안어민을 연안어장에서 내쫓는 『공수부

27) 김우성, “굴 수하식 양식어업의 轉業기업화를 위한 경영연구,” 『수산경영론집』, 제2권, 1971년, p. 14.

28) 당시에는 수산물수요증대라 하더라도 그 대부분은, 인구의 대도시집중현상과 도시민 소득증대 및 물적유통시설의 대도시중심적 발달에 기인하여, 대도시에서의 수산물수요증대에 의한 부분이 압도적이었으므로, 자본제적 근해어업이야말로 이러한 수요증대를 그 사정권내에 둘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와 같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당연한 결과로서,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연안어업의 분해과정은 현저한 것이었지만, 농업과 밀착한 기저층의 생존력 또한 끈질긴 것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어 비로소 농어민에 대해 눈이 돌려지게 되었는데, 그 정책적 표현이 『새마을 운동』이었다. 이미 양식업은 1970년이후를 그 확대적 보급기라고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술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으므로 영세어민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고조된 사실은 그 동안 억제되어 있던 어업정책에 대한 지선어민들의 요구를 일제히 분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어촌 각지에서는 양식어장의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들끓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부터이다. 그러나 일단 권리화된 어장이용의 배타독점성에 대해서 달리 대응책을 갖지 못한 어민으로서의 결국 그 불만의 화살을 수협에 돌리게 되었다. 1962년 설립 이후, 행정의 하청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제사업이라는 미명하에서 업무구역을 오로지 확대시켜온 수협은 그 대부분이 상업자본적 성격만을 浮彫시켜 왔을 뿐, 이미 진정한 어업권 관리자로서의 성격 내지는 자격을 상실하고 있었기에, 지금에 와서야 겨우 지선어장내의 양식 및 정치어업의 면허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린 어민의 불만은 수협에 대한 배신감으로 化한 셈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단행된 것이 1975년 12월의 어업법개정이며, 그 개정의 폭과 내용으로 봐서 필자는 이를 연안어업정책의 일대방향전환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첫째로, 종래 공동어업권을 수협만에 면허하고 있던 것을 어촌계도 그 향유주체로서 인정하고, 그 후 수협이 갖고 있던 어업권을 이양하도록 한 점, 둘째로, 과거의 무절제했던 면허남발을 방지할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비록 형식적인 것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이긴 하였지만, 어장계획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시책들이 강구되고 있었던 점, 셋째로, 더우기 이러한 일들이 一過性的의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전술한 공동어업권의 어촌계 이양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왔던 점, 즉 양식 및 정치어업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내용의 어업법 개정 및 어촌계의 법인화를 추진시키려고 한 것과 함께, 이어서 1980년대에 들어서도 공동어업권 어장내의 양식 및 정치어업권 면허시 어촌계에 대한 최우선순위 부여를 위한 어업법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취해져 왔다는 점 등으로 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더우기, 그 후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의 전환을 가장 명확히 나타낸 사건은 수산청이 수협중앙회에 대해서 모든 어업권의 면허에 있어서 어촌계를 최우선순위로 하는 내용에 관해 공개자문 및 공청회를 통해서 그 가부에 대한 의견을 타진토록한 일²⁹⁾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도 이미 권리라고 하는 것으로 무장한 어촌지배층 내지는 어민상층부에 대한, 또한 그 대부분이 업종별 수협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직화한 집단에 대한

29) 한국수산청, 『1982년 법령정비지침』, 1982년 1월.

투쟁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러한 노력 자체 혹은 그 결과는 스스로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4) 수협 및 어촌계의 공동어업권 이외의 면허취득

어업법 제27조 4항은 1975년 및 1981년 2회의 개정에 의해 현행의 내용으로 된 것으로, 전술한 정책전환의 신호탄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행의 제27조 4항은 어업법 제정당시에는 모든 어업권어업에 대해서 어민이 조직하는 법인이 「일정의 요건」³⁰⁾을 구비하는 경우 제1순위로 되도록 하고 있었다.³¹⁾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법인이란 수협을 가리키는 것인데, 수협이 그러한 요건을 전부 충족시키기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던 고로, 4항은 거의 무의미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75년의 어업법개정은 어촌계의 어업권향유능력과 관련한 제24조 4항을 신설함으로써 어촌계가 실질적으로 어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³²⁾과 동시에, 前記한 제27조 4항의 「어민이 조직하는 법인」으로 되어있던 것을 「어민이 조직하는 조합(수협) 또는 어촌계」로 개정하는 한편, 「조합(수협)과 어촌계가 경합한 때에는 어촌계를 先순위로 한다」고 하는 단서조항을 부가함으로써 제도적 정비를 행하였는데, 다시 그 후 1981년의 개정에서 현재와 같이 되고, 동시에 同27조 2항 1호도 새로이 덧붙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에서의 변화가 연안어장의 이용관계, 특히 어업권의 행방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던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업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인 어업법 제14조의 내용과 그 변천과정을 봐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나, 전술한 27조의 개정이 갖는 의의를 음미하면서 이것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순위에 관한 제27조 4항의 내용에 국한해서 본다면, 외관상으로는 제정당시와 1975년 개정후에 있어서 양식 및 정치어업권에 대한 어민단체로서의 수협 및 어촌계가 향유할 수 있는 어업권의 범위는 둘다 모든 어업권에 미치고 있고,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어업권의 면허에 대해서 제1순위로 되기 위한 「6개의 요건」을 감안해 본다면, 취득주체로 되는 수협과 어촌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광대한 업무구역과 그로 인한 구성원의 이질성으로부터 봐서, 수협이 어업권 취득주체로서 동질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자연부락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는, 수협에 비한다면, 이러한 동질성은 일층 강화된 것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물든 1981년 어업법개정이 행해지기까지는 제27조의 우선순위 그 자체가 여태껏 양식 및 정치어업권이 설정·개척되지 않았던 어장, 혹은 기존의 어업권자가

30) 현행 어업법 제27조 4항의 요건과 동일.

31) 한국수산진흥회, 『수산업법 변천과정』, 1986년, p. 99.

32) 이미 1972년의 어업법 제10조 2항의 개정에 의해, 어촌계도 수협과 함께 어업권의 향유주체로서 규정되고 있었지만, 법인격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에 있어서는 어촌계에는 어업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 후 1975년의 개정에서 제24조 4항(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향유하는 어업권은 이를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를 신설하여, 어촌계의 총유형태로 어업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어업을 포기한 어장인 경우라야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는 어업법 제14조에, 1971년 어업법 개정시 「어업권이 소멸한 어장에 새로운 어업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어업권자에 우선적으로 면허한다」라고 하는 제27조에 우선하는 내용이 첨부되었는데, 그것이 1981년의 개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보더라도, 1981년의 개정은 이미 형식적으로는 어업권주체로서의 주도권이 수협으로부터 인계된 어촌계에 대해서 실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일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제27조 4항의 적용대상이 모든 어업권에서 제1종 공동어업권 어장내의 양식 및 정치어업권으로 형식상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수익성이 높은 어장은 거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였고,³³⁾ 위험성이 큰 새로운 어장을 개척하는 일은, 어촌계의 능력에 비추어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촌계가 향유할 수 있는 양식 및 정치어업권의 범위는 실제로는 크게 확대된 셈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겨져 있었다. 그것은 어촌계가 이러한 어업권의 면허에 있어서 제1순위로 되기 위한 「6개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일로서, 바꾸어 말하자면, 어업법제정 이후 한번도 손을 대어본 적이 없는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연안어업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현재에도 타당한 것일까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의 「6개의 요건」이란 것이 일본어업법 제16조 6항, 즉 정치어업에 대해서 地元어민 7인이상이 구성된 또는 사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이 면허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서부터 모방한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일본어업법상 전술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수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생산조합의 요건」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생각컨대, 일본어업법 제16조 6항은 정치어업의 면허에 있어서 어업생산조합이 우선순위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이라 보더라도 좋을 것 같다. 따라서 한국어업법 제27조 4항의 「6개의 요건」에 대해 어촌계로의 그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어촌계와 일본의 어업생산조합을 비교해 보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보겠다.

우선 한국의 어촌계에 대해서는 어촌계와 수협과의 관계를 언급한 장수호교수의 견해³⁴⁾를 인용해 본 즉, 『어촌계의 수협계통조직상의 위치는 법률제도상으로는 단위조직이 아니라 지구별조합의 하부에 설립된 최말단 실행조직, 혹은 기반조직이지만, 그 경영활동면으로부터 봐서 지구별조합의 단순한 하부조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협계통조직상 일영역을 점하는 독립적 경제구성체인 계열조직으로서 인식되지 않으면 안될 상태에 있다』고 하고 있다. 수협법이 어촌계를 수협의 하부조직으로 두게 된 이유는, 경제사업의 강화 및 업무구역의 광역화로 인해 어장관리기능의 약화가 예상되었던 고로, 수협소유의 공동어장에 대한 어장관리 및 行使단위로서 小地域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하부조직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며, 이러

33) 최정윤, “천해양식어업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16권 제1호, 1985, p. 118.

34) 장수호, 『어촌계에 관한 연구』, 태화출판사, 1980, p. 113.

한 요구에 부합되는 조직이란 종전부터 同어장을 관행에 따라 이용하고 있던 어촌부락이었다.

정책이 생활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한 어촌부락에 대해서 어촌계를 조직케 함으로써 산업적 측면에서 분화를 촉진하고, 포섭하려고 했지만, 수익성이 낮은 공동어업 등에만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그리하여 상대적 빈곤과 소외된 계층으로 내팽개쳐진 대부분의 경우, 공동체적 성격이 보다 강조되는 가운데 오히려 개념적으로는 어촌계가 『부락』에 흡수되고 있는 경향조차 나타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촌계원의 자격³⁵⁾(=조합원의 자격)이 여전히 『1년을 통하여 60일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도 엿볼 수 있지만, 나아가서는 이로 인한 구성원의 비순수성이 어촌경제발전에 질곡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 물론, 현실에 있어서 한국의 어촌계는 산업적 의미에서의 기능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소외된 어촌에 있어서 단순한 지역단체라고 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前記한 인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협의 하부조직이라는 최초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독립적 경제구성체로 化하고 말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어촌계가 갖고 있는 공동어업권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결과³⁶⁾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어촌계에 비한다면, 일본의 어업생산조합은 참으로 생산면에 있어서 노동의 협동화를 지향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조합이 행하는 사업은 어업 및 이에 附帶하는 것 만이 한정되어 있고,³⁷⁾ 이들 사업과는 별도로 조합원 각자의 어업경영으로부터 요구되는 사업을 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합원으로 되는 자격에 대해서는 「어민이며, 정관에서 정하는 자」³⁸⁾로 되어 있고, 정관에서 정하는 자격에 관해서는 「어민이기만 하다면, 주소가 어디에 있든, 어업을 행하는 日數가 며칠이든 상관없다」³⁹⁾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봐서, 정관에서 정하기에 따라서는 조합원의 이름을 직접 정관에 기재하더라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자로 하더라도 무관한 셈이다.⁴⁰⁾ 그러나, 생산조합은 궁극적으로는 이들 조합원에 의한 「소유와 경영, 그리고 노동의 일치를 理想으로 하는 것」⁴¹⁾이므로, 일본수협법 제80조 내지 제82조에서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은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에 常時 종사할 것, 조합원은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에 常時 종사하는 자의 2분의 1이상일 것, 조합원은 1구좌 이

35) 최정운, 『바다 및 어촌종합개발방향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7, p. 133.

최정운교수는 「수협법제정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조합원만이 어촌계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없었고, 계원의 자격은 당해지역에 살고 있는 어민으로서, 1년을 통해서 12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현재보다 어촌계의 순수성은 일층 강화된 것이었지만, 그후 곧 수협의 하부조직으로 됨에 따라 변질되어 갔다」고 하고 있다.

36) 이러한 사실은, 수산물 채포 및 수익금 배분에 있어서, 행정부락이 그 주체로 되어 행하는 경우가 조사 대상 어촌계 가운데 각각 57.7%, 70%를 점하고 있음에 반해, 행정부락이 그 주체로 되고 있는 경우가 각각 29.4%, 22%였다고 하는 사실로부터도 명확히 된다.

37) 일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8조.

38) 同上 제79조.

39) 수산사,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설」, 1986, p. 283.

40) 同上, p. 284.

41) 同上.

상 출자할 것」 등이 생산조합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외에, 또한 「설립 및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조합원수를 7인」⁴²⁾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로부터 한국의 어촌계와 일본의 어업생산조합과의 성격의 차이가 명확히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하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어업법 제27조 4항의 「6개의 요건」이 일본어업법 제16조 6항의 「요건」으로부터 모방한 것이라는 점과 관련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일본어업법 제16조 6항의 「6개의 요건」이란, 요컨대, 정치어업의 면허를 행함에 있어서, 당해 地元어민을 一定정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생산조합이라면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따라서 그 「요건」이라는 것도 대체로 생산조합의 본질적 성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본 즉, 이를 모방한 한국어업법 제27조 4항의 「6개의 요건」도 대개 일본의 생산조합의 본질적 성격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단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의 어촌계가 제1종 공동어장내의 양식 및 정치어업의 면허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본의 생산조합과 같은 성격, 다시 말해서, 현실의 어촌계와는 확연히 다른 성격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의 생산조합에 대한 「요건」이라는 것을 지역단체화된 한국의 어촌계에 적용하는 일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굳이 그 하나 하나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까지도 없이, 「구성원은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억지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III. 입어 및 입어권

1. 어업권과 입어 및 입어권

어업법에서 말하는 입어란 어업권제도에 근거한 개념으로서, 종래 자유롭게 입회해서 조업하던 어장을 대체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 그 각각의 어장의 이용에 대해서 관리기능과 결부시키면서 어업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결과, 이러한 어업권을 가질 수 없는 관행에 의한 어업자를 보호할 보완적 조치가 필요하게 되어 생겨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즉, 입어와 어업권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前者가 後者の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일까, 아니면 상호대립하는 개념일까에 대한 고찰이 우선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어업권제도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될 일로서, 사회경제적 현실에 충실히 입각하면서 사회복지적 기능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입어는 어업권제도 그 자체가 갖는 본질적 결함을 보완한다고 하는 성격이 강조될 것이며, 따라서 배타적 권리로서의 어업권

42) 일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6조 3항, 4항.

의 본질적 부분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 그 제도가 당해어업으로의 자본의 참가를 유인 내지는 촉진시킴으로써 생산력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 즉 산업적 기능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입어는 어업권에 대해서 제한적 의미 밖에 갖지 못할 것이며, 결국에는 소멸되어 갈 것이다.

戰前의 명치어업법의 의의에 대해서는 우선 봉건적 관행을 제도권내로 포섭하는 데 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그것은 관행을 존중하는 것이 안될 수 없었고, 그리하여 명치어업법 시민법에 傾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장이용을 둘러싼 어업내부의 압력을 식민지 등의 해외어장의 확대를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 길도 있었기에, 戰前의 全期間을 통해, 연안어장의 이용에 있어서 관행에 의한 입어는 어업권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이러한 입어를 권리로서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입어권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었다.⁴³⁾ 이와같이 戰前의 일본의 명치어업법은 입어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또 물권으로 간주하였음에 반해, 동일한 명치어업법 체제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어서는, 단지 입어의 관행이라고 부를 뿐,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일은 심히 대조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양세식 교수는 『식민지였던 한국에 있어서의 어업착취는 형식적으로는 시민법적 재산권적 질서의 위에서 행하여졌던 것이어서, 이것과 이질적인 관행에 대한 권리성의 인정에 인색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⁴⁴⁾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동감은 하면서도, 덧붙여서, 일본의 경우는 어업권제도의 창설당시 어선어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연안어장에서의 입회관계가 매우 복잡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어업권제도 실시의 초기에 있어서 아직 복잡한 입어관계가 형성될 정도로 어업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점도 이러한 양국에 있어서의 차이를 가져온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다른 역사적 경과를 거쳐온 양국의 어업법이, 戰後, 입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를 보고자 한다.

2. 일본에 있어서의 입어 및 입어권

일본어업법 제7조에서, 입어권이란 『설정행위에 근거하여 타인의 공동어업권 또는 특정구역어업권에 속하는 어장에 있어서 그 어업권의 내용인 어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하고, 소위 조합관리어업권에 한해서, 설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에 있어서의 입어에 대해 그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 어떠한 경우

43) 明治어업법 제12조에서는 설정행위에 의해 타인의 전용어업권에 속하는 어장내에 입어하려고 하는 자를 입어권자라고 칭하고, 권리를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우기 同13조에서는 입어권을 물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44) 양세식, “한일수산법제의 비교연구(Ⅰ),” 『부산수산대학논문집』, 제13권, 1974, p. 44.

에,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입어권을 설정하는가에 관해서 일본 어업권제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어장계획과 관련지워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입어가 배타적 권리인 어업권의 어장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관행이며, 이러한 관행이란 당해 어업권어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축적된 경험을 그 가운데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목표로 두고, 사회경제적 조건을 주축으로 하면서 또한 기술적 측면을 고려해서 수립되는 어장계획이란 그것에 의해 어업권주체의 운곽이 드러나게 되며, 또 일단 어업권이 부여되나서는 어장이용은 지역주의를 띄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당해어장에 의존하고 있는 어민의 생활과 그들의 축적된 경험에서 오는 높은 생산력을 발휘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어장계획의 수립과정이란 실로 이러한 문제를 위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고, 어장계획의 모든 내용은 이들과 관련한다. 덧붙여 말한다면, 당해어장의 이용관계 및 실태로부터 봐서, 어업권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어장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함은 물론이다.

아 물론, 일단 어업권의 내용과 어장의 범위가 정해지고 나서는, 어장계획의 과제는 여하히 한다면 당해어장에서 특히 당해어업에 종사해 온 자들을 금후의 어업권에 근거한 어장의 이용자로서 포용할 수 있을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地元 및 關係지구의 결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당해어업을 행해 왔던 어민이 단일의 『수협』의 업무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정이 좋겠지만, 이러한 일은 현실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地元 및 關係지구를 광역화하는 일도 어장이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로 된다. 실로 예술가적 감각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地元 및 關係지구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협』의 單獨 내지 共有의 형태로, 혹은 『수협』간의 합병 등을 통해서 이러한 일에 대처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어민에 대해서이며, 이러한 경우의 어업조정이야말로 일본의 입어제도가 갖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의 입어제도란 어업권제도가 갖는 본질적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며, 따라서 입어권은 어업권의 본질적 부분을 이루고 있다⁴⁵⁾고 할 것이다.

관련해서, 입어권 그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고자 하여, 먼저 어업제도 개혁당시 수산청의 지도통첩중에서 『地元 및 關係지구에 대하여』로 부터 입어권설정의 배경에 관해 언급한다면, 먼저 地元지구에 대해서는, 『동떨어진 지역은 地元지구로 하지 말고 입어권으로써 해결한다』⁴⁶⁾고 하고 있고, 關係지구에 대해서는 『입회사소한 것일 경우, 혹은 어장에서 부터 아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關係지구로 하지 말고 입어권을 설정한다면 좋을

45) 여기에서 본질적 부분이라고 한 것은 입어가 어업권 설정을 위한 어장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이며, 따라서, 어업권과 입어권을 합쳐서 광의의 어업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46) 註6) 전계서, p. 201.

것이다』⁴⁷⁾라고 하고 있다. 요컨대, 입어권을 설정하는 경우란 대체로 입회조합이 사소한 지역, 또는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대해 당해어업을 행하고 있는 어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사실로부터 봐서, 이러한 입어라고 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연안어업의 橫斷的 어장확대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입어권은 개인의 어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어권 설정의 대상이 조합관리 어업권에 한정되어 있는 점으로부터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어업은 그 유지·발전을 위해 단체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는 점에서 입어권자 등에 대해서도 단체적 관리를 위해 일본어업법 제42조의 2는 입어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수협』 및 同연합회에 한정하고 있다. 金田씨는 이러한 점으로부터 입어권을 『설정행위에 의한 어업권자의 관리권한의 일부이전』⁴⁸⁾이라고 하고 있다.

덧붙여 말한다면, 입어권은, 어업권자에 대해 붙인 제한조건⁴⁹⁾ 혹은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지시에 근거해서, 입어하려고 하는 『수협』 및 同연합회가 어업권자인 『수협』 및 同연합회와 입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3. 한국에 있어서의 입어

입어제도에 있어서 한국은 전술한 戰前의 조선어업령하에서의 그것에 비해 일보도 나아진 것이 없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의 『입어』라고 하는 것이 조선어업령하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어업권의 제한에 근거한 『사실상의 입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서, 『입어』의 권리성 유무에 대한 반사적 이익설과 권리설과의 학설상의 대립은 실로 한국의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일본의 경우는 그 논의의 여지조차 없다고 생각된다.

독립후 연안어장의 이용에 있어서 행정에 관행에 근거한 입어를 어촌질서정비에 대해 암적 존재로 보고 그 정리에 적극적이었고,⁵⁰⁾ 따라서 입어자에 대해서는 어업권자인 수협에 가입케 하든지, 혹은 관행입어자의 자연사망 등에 의해 관행입어는 자연히 소멸·정리되어 갔다고 할 것이다. 한국어업법상의 입어에 관한 규정은 어업법 및 관계법령의 도처에 보이지만, 입어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서 어업법 제40조 1항은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해 그 어장에서 조업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同규정으로 봐서, 한국의 경우, 관행에 근거한 입어는 공동어업권어장에 한정되어 있고, 입어권자의 자격이나 입어계약설정 등에 관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입어의 본질적 성격을 나타내는 규정이 빈약한 것은 『입어』를 단지 어장이용질서

47) 同上書, p. 199.

48) 註4) 전계서, p. 195.

49) 일본어업법 제34조 1항을 참조.

50) 양세식, “한국수산업법연구(II),” 『부산수산대학논문집』, 제20권, 1978, pp. 66-67.

에 대한 암적 존재로서 인식한 행정의 사고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행정의 사고방식과 그로 인한 규정의 불명확함에 기인하여, 어업법시행 당초, 각종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태에 그저 대증요법적 처방 만으로 대응한 결과, 관계 법령상의 도처에 산만한 흔적을 남기도록 된 것이다.

따라서 『입어』의 본질적 성격에 관해서는 당시 이러한 분쟁을 판결한 대법원판례로부터 살펴볼 수 밖에 없는데, 이하 이들 가운데 몇개를 요약하기로 한다.

한국 대법원의 판례는 『입어』의 가장 기초로 되는 관행에 대해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어장에서 오랫동안 어업을 계속해 온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⁵¹⁾으로 解하고, 그 권리성에 대해서도 『단순히 어업권자의 어업권행사에 붙여진 일종의 제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에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⁵²⁾고 하여, 반사적 이익으로서가 아니라, 권리로서 해석하고 있다. 또, 이러한 입어자가 어업권자인 수협에 가입한 경우의 관행 또는 입어의 행방에 대해서도, 수산청의 해설⁵³⁾과는 반대로, 『비록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관행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다』⁵⁴⁾라고 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에 있어서 어업권의 면허주체인 행정청의 『입어』에 대한 시각은, 과거의 조선어업령시대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堅持해 왔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어장이용질서에 대한 암적 존재로 간주하고, 소멸시키려는 방향에서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일본이 입어권을 어업권의 본질적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한 데 비해, 한국은 이것을 어업권에 대한 단순한 제한의 결과로서, 또한 어업권과는 대립적 관계의 것으로 간주한 결과, 『입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향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실로 행정의 독선을 여기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일이, 어촌경제의 상대적 빈곤의 심화와 함께, 각종의 부정어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맺는 말

어업권을 누구에게 부여할까 하는 일은 연안어장의 이용을 누구에게 맡긴다면 좋을까 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현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서 장기에 걸쳐 안정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장기적 안목의 결여로 효율성만을 서둘러 추구하는 일은 현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무시한 행정의 독선으로 되어 나타나기 쉽고, 또 그 결과는 단지 상업자본가의 영리추구만을 두

51) 대법원, 1969. 3. 31 선고.

52) 대법원, 1963. 2. 28 判 62조 882호.

53) 한국수산청, 『법령질의응답집(IV)』, 1962, pp. 17-18.

54) 대법원, 1963. 6. 6 判 1021-4-1.

드러지게 하는 것으로 되어서, 급속한 어장의 노후화 및 어장생산력의 저하로 끝나는 일들을 왕왕 보게 된다. 지나치게 지역주의만에 집착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리추구를 본질로 하는 외부로부터의 자본을 도입하는 것만이 안정적 생산과 효율적 어장이용을 보증한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戰後 한국에 있어서 무절제했던 행정주도하에서의 어업근대화는, 그 자체가 과도기적 성격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애시당초 연안어장의 특성에 기인하는 지역성을 무시하고 어장이용관계를 그것에 의해 고정화시킬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중반이후의 연안어업정책의 방향전환은 일면 이러한 점에 대한 행정의 반성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일단 권리로써 고정화된 어장이용관계는 미온적인 대책을 갖고서는 개혁될 리가 없는 것이다. 한국의 어업권 면허우선순위는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는 물론 현재에 있어서도, 고정화된 어장이용관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의 여지조차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우성, "굴 수하식 양식어업의 轉業기업화를 위한 경영연구," 수산경영론집, 제2권, 1971, pp. 7-26.
- 2) 대법원, 1969. 3. 31. 선고.
- 3) 대법원, 1963. 2. 28., 判 62조 882호.
- 4) 대법원, 1963. 6. 6. 判 1021-4-1.
- 5) 수산사,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설」, 수산사, 1986.
- 6) 양세식, "한국수산업법연구(I)," 부산수산대학논문집, 제15권, 1975, pp. 41-68.
- 7) 양세식, "한국수산업법연구(II)," 부산수산대학논문집, 제20권, 1978, pp. 53-70.
- 8) 양세식, "한일수산법제의 비교연구(I)," 부산수산대학논문집, 제13권, 1974, pp. 1-48.
- 9) 장수호, 「어촌계에 관한 연구」, (부산:태화출판사), 1980.
- 10) 최정윤, "천해양식어업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16권, 제1호, 1985, pp. 91-124.
- 11) 최정윤, 「바다 및 어촌종합개발방향과 정책과제」, 韓國농촌경제연구원, 1987, p. 133.
- 12) 한국수산업법.
- 13) 한국수산업법시행령.
- 14) 한국수산진흥회, 「수산업법 변천과정」, 1986년.
- 15) 한국수산청, 「1982년 법령정비지침」, (1982. 1.).

- 16) 한국수산청, 「법령질의응답질 (IV)」, 1962.
- 17) 金田禎之, 「實用漁業法詳解」, 東京; 成山堂書店, 1988.
- 18) 明治어업법.
- 19) 鈴木旭, “어업권제도와 어장이용,” 漁業經濟研究, 第26卷, 第1·2合併號, 1981. 3, p. 11
- 20) 일본수산청, 「漁業基本對策史料」, 第1卷, 1963.
- 21) 일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8조.
- 22) 일본어업법.